

의안 번호	2553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】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2. 26.(목) 김태욱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2. 26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3. 10.(화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김도운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, 유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공용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공용차량의 이용 횟수 및 기간, 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,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-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4조 및 제94조의2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5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명주)

#### 가. 검토 사항

##### 1) 제정배경

-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과 공유하여 이동 수단, 여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유희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.

##### 2) 내용검토

###### 가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조례의 목적 명시
- 공용차량, 공용차량 공유사업, 이용대상자, 이용자, 운전자에 대한 용어 정의

###### 나) 이용대상자에 대한 범위(안 제3조)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이용대상자에 대한 범위 각 4호 명시

###### 다) 이용신청 및 승인(안 제4조)

- 이용신청 시간과 신청서 제출 사항 규정함.
- 구청장의 승인 여부 결정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규정
- 자격 여부 검토 사항 및 민원인 사용 통보, 탑승 인원에 따른 배차 공용차량의 종류, 이용신청 취소 규정 등 명시함

###### 라) 이용 횟수 및 기간, 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

**(안 제5조~제6조)**

- 동일 이용 대상자에 대한 규정, 추가 이용 허용 가능 범위 등 명시

**마)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,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**

**(안 제7조~제9조)**

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내용 규정
- 동의받은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
- 전자정부법에 따라 이용대상자·운전자의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 처리 규정 명시

**바)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**

- 공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5가지 요건 규정
- 요건 미구비 확인시 이용승인 취소와 공용차량 입고 요구 규정 명시

**사)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(안 제11조)**

- 공용차량의 출고와 입고에 관한 내용 규정
- 차량운행일지 작성·관리 규정 명시

**아) 이용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및 위반에 대한 조치(안 제12조~제13조)**

- 이용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12개 항목 명시
- 위반에 대한 조치의 기준을 별표 규정

**나. 검토 의견**

-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이 없는 주말 및 공휴일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과 공유하여 소외 계층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,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희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이용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으로 범위를 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을 배려하였고,

-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차량의 이용신청, 이용횟수, 기간, 승인 등 행정절차를 정하여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, 안 제10조의 운전자의 자격,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이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음.
-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의 소유는 필수적이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상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공용차량의 무상 대여는 그들의 여가 활동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요율 증가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및 자동차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세부 시행규칙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**근 거 법 규**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**제74조(대부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 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, 대부료의 계산방법, 대 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94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)**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 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 정·운영할 수 있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**제75조(무상대부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.

1. 국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(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 원인 경우로 한정한다),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 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 는 경우

2.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 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

3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무품을 대부하려는 경 우

4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「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)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

의안 번호	2556	[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6년 정비·운영 계획 보고의 건]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2. 26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2. 26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3. 10.(화)

## 2. 제안 요지 (기획예산실장 민병률)

### 가. 제안 이유

- 우리 구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,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,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폐지를 추진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와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6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(기본현황, 위원수, 개최현황 등) 및 정비현황
- 2026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 보고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~제80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

## 3. 심사결과: 보고 완료